EC 공동체 상품인증 세부기술 규정안내 (3)

조화된 표준들에 대한 설명각서

1. 도 입

가. 조화된 표준들의 개념은 신접근 지침서들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것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표준들의 정의와 관련하여 일련의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공동체 의무규정의 역할, 필수적 요구사항들에의 부합성의 가정, 공동체 및 국가별 차원에서 표준화 조직 및 공공기관들의 각각의 능력 나아가 "조화된 표준이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은 표준화 조직들과 관련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는 그 정의가 ISO정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문제는 첫째 파트에서 조화된 표준들이 의미하는 바를 지적하고 있는데 또한 그들의 부합성의 가정을 낳는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번째파트에서 그것은 표준보호조항의 사용을 간단히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은 일반적인 용어로서 표준화 조직들의 각각의 책임 즉, 조화된 표준들과 관련한 위원회 및 회원국들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2. 신접근에 있어서 조화된 표준들의 개념

두가지 요소들이 이개념과 관련하여 명확히 분별되어야 한다. 즉, 조화된 표준의 존재, 그리고 부합성가정의 문제

가. 조화된 표준들의 정의

지첨서들 또는 기술, 건설장비 디렉티브의 4는 조화된 표준들을 유럽표준화 조직에 의해 채택되 기술시방서로 묘사하는데 이는 1984년 11월 13일 위원회(Commission)와 표준화조직들간에 조인된 일반정향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디렉티브 83/189/EEC에 따라 발간된 위원회에 의한 의무규정을 수반하고 있다.

1) 의무규정

Mandate는 83/189위원회와의 협의후에 만약 관련부문위원회와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유럽표준화조직들을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는 위원회(Commission)에 의한 도구인데 이때 Mandate가 신접근 지침서들 및 그러한 지침서들의 의미내의 조화된 표준들하에 주어진다.

명령규정은 신접근 지침서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디렉티브 83/189는 공동체가 유럽표준조직들에게 표준화 의무규정(Mandate)를 부여할 가능성을 예시하는데 그것에 대해 83/189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상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접근 지침서내의 Mandate의 요구사항은 83/189 지침서의 일반원리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규정들은 표준화 조직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범위내에서 표준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법적틀은 가능한 정확히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법적틀은 조화된 표준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침서뿐 아니라 표준제정자가 표준제안을 위해 깨달아야 하는 기타 지침서 또는 공동체 정책과도 관련된다. 의무규정(Mandate)는 어떠한 측면이 공동체 입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의무규정하에 표준화의 주제가 아님을 또한 명시할 수 있다.

실제로 의무규정들(Mandate)는 하나이상의 유럽표준화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유럽표준조직들에 전달될 것이다. 의무규정이 하나 이상의 조직에 주어지는 경우 의무규정(Mandate)는 관련조직들에 의해 합동으로 받아들여지며 활동들은 긴밀한 제휴하에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유럽표준화조직들은 그들 활동의 조정 및 공동응답을 보증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도입했다.

83/189위원회(Commission)의 논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필수적이다. 그 범주내에서 조화된 표준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틀은 국가별 기관들의 광범위한 협의를 의미한다. 의무규정(Mandate)기간에 관한 협정은 그러므로 표준들이 개발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

건설장비 지침서의 경우 그 지침서하에 설립된 상임위원회의 의무규정(Mandate)에 관한 논의가 또한 예측된다.

Mandate라는 용어는 비록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 내용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용어는 아니다. 영어번역에서 예를들어 사용되는 용어들은 "위원회(Commission)에 의해 소개되는 것", "위원회로부터의 송금", "위원회의 선동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보다도 표준화 활동들이 상의되는 국가들에 있어 위원회의 공식적 초청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표준조직들은 그들 자신의 내부규정들에 합치하여 위원회에 의해 주어진 Mandate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Mandate 및 계속적인 작업프로그램의 이들 조직들에 의한 채택우로 83/189 지침서 및 그들의 내부 규정들에 규정된 정지기간을 시작하게 된다.

〈참조〉 1984년 11월 13일의 일반정향들

CEN/CENELEC이 각서 4로서 발간한 이러한 정향들은 표준화 및 기술조화작업에서의 표준의 사용에 관련되는 위원회(Commission) 및 CEN/CENELEC에 의해 합의된 일련의 원리들 및 책무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향들에 대한 언급은 거기에 언급된 다양한 요소들 즉, 모든 관련당사자들의 참여, 공공기관들의 역할, 표준들의 질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정향들이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예지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참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그러한 기관들이 신접근 지침서의 수행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이며 그들의 공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록 그러한 참여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표준화 과정에 있어 어떠한 계층제적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표준조직들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의한 참여는 중요한데 이는 표준화 과정들을 통한 참여 및 대화가 표준이 일단 채택된 후 승인을 보증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2) 기술시방서

유럽표준조직들이 제출토록 요청되는 서류들은 유럽표준 또는 조화서류들이다. 이러한 정의에 있어서 신접근 지침서들은 조화된 표준들이 유럽표준들 중에서 특정한 범주인것처럼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유럽표준화의 틀내에서 그들의 권리인 서류들의 자격부여이다. 위원회의 견지에서 볼 때 유럽표준들은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조화된 표준들을 제출함에 있어서 표준조직들은 새로이 개발된 표준들을 제출하는데 한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검사 이후 그들이 판단하는 현존표준들을 또한 명시할 수 있는데 이는 Mandate의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존 표준들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83/189 위원회(Commission) Mandate에 관한 논의는 심지어 신표준들의 어떠한 개발도 요구되지 않으며 표준제정자들이 현존 유럽표준들을 제출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국제표준이 유럽표준으로 치환된다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

표준을 제안함에 있어서 조직들은 표준들이 관련되는 필수 요구사항들을 지적해야 한다.

조화된 표준들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주목할 사항은 공동체 지원공급 및 EC관보에 조화된 표준참조문을 발간하는 것이다.

〈참조〉 재정지원

공동체는 신접근 지침서하의 Mandate의 기반하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와 상관없이 유럽표준들의 개발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재정적 원조는 표준화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지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민간표준조직들에 의해 커버되지는 않는 영역에서의 표준을 촉진하거나 또는 산업 또는 시장에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으나 일반이익을 위해서는 표준들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재정지원은 유럽표준들 또는 조화서류들이 신접근 지침서하에 조화된 표준들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조건은 아니다. 조화된 표준들에 관한 의무규정은 공동체 재정지원없이 주어질 수 있다.

공동체 재정지원은 유럽표준조직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들은 근간계약(Frampwork lontract)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근간계약하의 order voucher라 불린다. 의무규정은 유럽표준조직들에 개별적으로 또는 합동으로 주어질 수 있는 반면 order voucher는 개개 유럽표준조직들과 함께 결정될 것이다.

order vouchers는 이리하여 조화된 표준들 이외의 목적에 관해서도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목적은 신접근디렉티브들의 실행, 표준화프로그램의 준비, 연구, 작업장 회의의 조직을 의도하지 않은 유럽표준들의 개발 같은 것이다.

83/189 위원회는 Order vouchers에 대해 논의되지 않는다.

order voucher가 의무 규정에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의무규정에 관해서 논의 되었을 것이다. 83/189 위원회의 논의를 재정지원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규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참조〉 조화규격의 참조자료 발간

참조자료의 발간은 조화된 표준들의 존재를 위한 조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신접근 지침서들의 의미내에서 조화된 표준들로서의 유럽표준의 자격획득은 이러한 지침서들에서의 발간과 연계되지 않는다.
발간과 정의는 언제나 분리된 Article 또는 그러한 디렉티브들에 관한 상술에서 다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신접근 지침서들의 의미에서 조화된 표준들은 유럽표준조직들이 위원회(Commission)에 공식적으로 위에서 설명된 조건에 합치하여 만들어지거나 또는 확인되는 유럽표준들 또는 조화서류들을 제출할 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부합성의 가정

신접근 지침서들에 따르면 위원회가 EC관보에 발간한 참조자료는 조화된 표준들에 의해 커버되는 필수적 요구사항들에의 부합성을 가정한다.

부합성에의 가정은 다음 요소들에 의존한다.

1) 참조자료의 발간

EC관보에 위원회에 의한 참조자료 발간없이 표준의 사용은 부합성에의 가정을 낳지 않는다. EC관보에의 발간의 주된 동기는 법적인 의미에서 부합성에의 가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확한 날짜설정이 되어야 하며 모든 공동체 운영자들은 그것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 및 법적확실성의 이유로 회원국가들은 국가별 표준과 조화된 표준과의 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규격과 대비를 하므로써 국가규격과 부합을 나타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럽위원회에서 간행되지 않은 비고표는 부합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2) 전 이

부합성에의 가정이 또한 유럽표준과 국가별 표준들과의 대비에 의존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신접근디렉티브들의 규정에서 비롯된다.

이는 만약 유럽표준들이 대비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가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록 참조자료가 OJEC에 발간되었을지라도) 반면에 한 국가가 부합성에의 가정으로부터 이익을 얻기전에 transposition(대비작업)이 모든 회원국가들내에서 수행될 필요는 없다.

위에서 미루어 볼 때 신접근 지침서하의 조화된 표준들의 개념은 저전압 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조화된 표준의 개념과는 다름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의 부합은 LVD에 언급된 안전 목표들의 합치를 의미한다. LVD하의 조화된 표준들은 개별회원국에 의해 기타 회원국들 및 위원회(Commission)에 통보된 기관들에 의한 일반협정에 의해 확립된 표준들로서 국가별 절차들하에 발간된다.

조화된 표준들 및 그들에 관한 참조자료의 리스트는 통보의 목적으로 OJEC에 발간된다.

그것은 ISO/IEC에 정의된 조화된 표준들과 다른데 여기에서의 조화된 표준들은 같은 주제에 관하여 여러 다른 표준화기관들에 의해 승인된 표준들로서 제품, 과정, 서비스의 교환성을 확립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준들에 따라 제공된 정보 또는 시험결과들의 상호이해를 확립한다.

3) 표준보호조항의 사용

신접근 지침서들은 조화된 표준이 이의제기 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다.

회원국 또는 위원회(Commission)가 조화된 표준이 필수적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간주할 경우 위원회 또는 관련된 회원국은 83/189위원회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것이 규정된 경우 부문별 위원회에 이유제기와 함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위원회(Commission)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Commission)는 회원국들에게 발간된 정보로부터 그들 표준들에 관한 참조자료를 철회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통보할 것이다.

이 조항은 조화된 표준들의 존재와 관보에의 참조자료 발간에 바탕을 둔 부합성에의 가정과의 차이에 근거를 둔다. 이 조항의 이용은 조화된 표준들로 인정된 유럽표준들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위원회(Commission) 그리고 회원국가들에 의해 발간된 정보의 철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조화된 표준들에의 부합성이 더이상 필수적 요구사항들에의 합치가능성을 낳지 않

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CE마크가 부착될 수 있는 절차들에 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4) 유럽표준기관들, 위원회 그리고 회원국들의책임

신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 바탕을 둔다. 한편으로 유럽표준화 과정이 신접근 지침서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표준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 필수적 요구사항들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 입법자, 회원국가 및 유럽표준화 조직들간의 책임공유를 의미한다.

신접근법은 유럽표준화가 민주주의, 투명성, 독립성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는데 이는 표준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상태를 반영함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된 일반 안내의 참조자료의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된 일반 정향들의 기반위에서 위원회(Commission)와 국가기관들은 Mandate에 위해 커버되는 표준화 활동들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은 공공질의 단계에서의 관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신접근 지침서들은 절차를 예견하지 않는데 그 하에서 표준화 과정들의 절차적 보증과 함께 채택된 조화된 표준들은 기술적 내용들을 공동체 또는 국가별 차원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신접근법이 고안됨에 따라 표준을 제정·식별하고 위원회(Commission)에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은 유럽표준화 조직들의 책임이다. 표준들의 내용이 필수적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킴을 보증하는 것도 그들의 책임이다. 신접근법이 고안되는 방식에 있어 위원회(Commission)는 표준의 기술적 내용에 관해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

위원회(Commisson)는 그러나 약정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위원회가 표준이 약정(terms)을 충족시키지 않음을 발견할때 관련 표준의 참조자료를 발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조화된 표준이 부합성에의 가정을 낳을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단일한 유럽표준이 시장수요에 바탕을 둔 필수요구사항들 및 기타 규정들에 관련된 규정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제품시방서 같은 것은 필수적 요구사항과 연계되지 않는다) 부합성평가 절차들은 관련 지침서들에 명시된 것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부분은 표준의 구조내에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는 필수적 요구사항들에 관련된 부분에만 참조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회(Commission)의 표준화 과정에의 참여는 Mandate의 약정(terms)가 적절히 이해됨을 보증토록 해야 한다.

신접근법하에 공공기관은 안전성보호(또는 기타 법적 요구사항의 완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보호의 정도(차원)는 신접근 지침서를 자체에 설정되고 표준화 조직들에의 Mandate에 나타나게 된다. 같은 이유로서 신접근 지침서들은 안전절차들을 내표하는데 이는 CE마크 부착 제품의 부합성, 표준의 질 또는 인증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신접근법하에서 위원회(Commission) 및 회원국들이 승인절차 대신 안전조항을 통해 조화된 표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은 조화된 표준들의 기술적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입증이 가정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단지 표준이 필수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또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부족함을 드러낼 경우만 공공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화된 표준의 참조자료의 발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표준의 기술적 능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신접근 지침서 및 그 어구의 정신이 주어진다면 위원회(Commission)는 표준 또는 그 일부에 관한 참조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Mandate의 약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별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무조건적인 힘은 없다. 회원국들은 그들은 국가별 표준과 조화표준의 대비표를 작성할 때도 절대적 힘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社 告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반납요청

공업진흥청에서는 배전전압 승압계획에 따라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10V전용제품은 1979년 1월 1일~1993년 1월 1일(전동공구7품목 1995년 7월 1일), 110/220V 겸용제품은 1993년 1월 1일 ~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품목별로 형식승인 금지시기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110/220V겸용제품의 금지시기가 도래된 다음제품은 금지시기 이후에는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할 수 없으며 형식승인 당시 금지시기가 도래되면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조건부로 승인된 것이므로 해당되는 형식승인서는 공업진흥청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지 시 기	대 상 품 목
1993년 7월 1일	선풍기, 비디오테이프레코다, 전기냉풍기, 전기보온밥통, 고주파웰더, 가정용저주파치료기, 가정용초음파치료기, 가정용초단파치료기, 전기세미기, 야채세정기, 전기빙삭기, 디스포자, 면도용거품발생기, 전동식흡입기, 전기맛사지기, 지압대용기, 기타가정용전동력응용치료기, 등사기, 물수건포장기
1994년 1월 1일	테이프레코다, 레코드플레이어, 전기축음기, 앰프, 튜너, 프리앰프, 테이프데크, 테이프플레이어, 기타음향기구, 초음파가습기, 전류제한기, 전기세탁기, 전기온풍기, 공기청정기, 전기마루닦기기, 전기구두닦기기, 전기탈수기, 전기칼날갈개, 전기흑판지우개크리나, 전동미싱, 사무용인쇄기, 전기열풍응용기, 8㎜영사기, 전자후레쉬, 조광기, 잡음방지기, 전기우물펌프, 모니터, 프린터, 전동타자기, 전기오븐, 전기건조기, 전기스토브, 기타채난용전열기구, 전기변좌